

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7조의2(동의를결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)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0조의3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및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요청 업무를 「소비자기본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신설>	제57조의2(동의를결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)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0조의3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및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요청 업무를 「소비자기본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특수거래과	
연 락 처	044-200-4438